

의안번호	2202266
의 퇴 인	김남희의원
회 답 일	2024.09.11.
추 계 번호	24C2332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그 지역 전체 장기요양기관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3항)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인구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음	의무규정
2	안 제35조의6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요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장기요양기관이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급,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함(제1항) ○ 제1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35조의6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 사업부서의 기본경비로 수행 가능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수반하지 않음

- (안 제35조의6)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인력 운용비)는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포함되며,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조정률을 위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인건비에 대한 논의와 기준 마련은 기존의 장기요양위원회의 업무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함

2. 상세 사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안 제4조)

- 개정안에 따라 지역별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지역 전체 장기요양기관¹⁾ 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경우 추가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비용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동 조문은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이므로 현시점에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신규 장기요양기관 설치 여부(또는 기존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공공으로 전환), 신규 설치 지역과 요양기관의 종류(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규모, 설치 시기 등 세부사항이 정해져야 하나, 현시점에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총 28,722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관은 257개로 전체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표 1] 참조)
 - －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3차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년)”에서 2027년까지 공립 요양시설 및 병원이 없는 지역(53개 시군구)을 중심으로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하여 치매전담형 공립 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지원 사업을 기 수행 중임
 - － 구체적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의 내역사업인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에 2025년 예산안 기준 216억 7,300만원을 배정하였으며, 신축 26개소(1년차 1개소, 2년차 8개소, 3년차 8개소, 4년차 9개소)²⁾에 대해 m^2 당 공사단가(198만원)를 적용하여 국비를 보조(국비 8: 지방비 2, 서울은 5:5)하고 있음

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대한 내용은 동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하며, 여기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이 포함됨

2) 부지선정 및 매입부터 건축까지 4년이 소요된다고 가정하고 설치비를 전체의 10%, 20%, 30%, 40%로 4년간 나누어 지급함

[표 1] 급여종류별·설립형태별 장기요양기관 현황(2023.12.31.기준)

(단위: 개소, %)

	재가급여			시설급여			합계		
	국공립	전체	국공립 비중	국공립	전체	국공립 비중	국공립	전체	국공립 비중
합계	148	22,040	(0.67)	122	6,255	(1.95)	270	28,295	(0.95)
서울	103	3,216	(3.20)	35	488	(7.17)	138	3,704	(3.73)
부산	1	1,370	(0.07)	1	121	(0.83)	2	1,491	(0.13)
대구	4	1,216	(0.33)	0	265	(0.00)	4	1,481	(0.27)
인천	4	1,284	(0.31)	1	500	(0.20)	5	1,784	(0.28)
광주	0	817	(0.00)	0	101	(0.00)	0	918	(0.00)
대전	0	727	(0.00)	0	156	(0.00)	0	883	(0.00)
울산	1	358	(0.28)	2	65	(3.08)	3	423	(0.71)
세종	1	73	(1.37)	0	21	(0.00)	1	94	(1.06)
경기	8	4,722	(0.17)	10	2,181	(0.46)	18	6,903	(0.26)
강원	0	639	(0.00)	10	332	(3.01)	10	971	(1.03)
충북	4	757	(0.53)	6	315	(1.90)	10	1,072	(0.93)
충남	1	1,108	(0.09)	5	367	(1.36)	6	1,475	(0.41)
전북	6	1,255	(0.48)	8	250	(3.20)	14	1,505	(0.93)
전남	10	1,069	(0.94)	30	322	(9.32)	40	1,391	(2.88)
경북	1	1,529	(0.07)	6	431	(1.39)	7	1,960	(0.36)

주: 괄호 안은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 대비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비중임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개정안에는 신규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지역의 단위나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설치 기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추계의 대상을 선정하기 어려움
 - － 보건복지부의 기존 사업인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을 고려하여 신청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개정안에 따른 “책무” 규정에 의해 지역별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30% 이상이 되도록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사업을 준용하여 전부 신축한다는 가정도 무리가 있음

[표 2]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내용

구분	내용
목적	○ 공립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및 장기요양기관 환경개선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 향상
지원대상	○ 일반요양시설 기능보강(증개축·개보수 등) :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리모델링) : 지자체 ○ 치매전담형 전환(증개축·개보수) :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필요시 지방비 추가 지원 가능)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 국비 80%, 지방비 20% (단, 서울은 50:50)
지원내용	○ 노인요양시설 등 기능보강(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확충(신축, 증개축, 개보수)
예산	○ 286억 4,900만원 - 노인요양시설 등 기능보강 38억 3,200만원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확충 216억 7,300만원
지원단가	○ ‘23년 기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및 증개축 지원단가 198만원/㎡ * (지원단가인상이력 (‘19) 150만원→(‘20, ‘21) 180만원→(‘22~‘24) 198만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지원비 산출내역	- (신축 1년차) 327백만원=1,980천원×2,360㎡×1개소×70%×10% - (신축 2년차) 5,981백만원=1,980천원×2,360㎡×8개소×80%×20% - (신축 3년차) 5,680백만원=1,980천원×1,494㎡×8개소×80%×30% - (신축 4년차) 7,596백만원=1,980천원×1,332㎡×9개소×80%×40% - (치매전담형 증개축 2년차) 1,711백만원=1,980천원×360㎡×6개소×80%×50% - (치매전담형 개보수) 378백만원= 750천원×180㎡×4개소×70%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